

712 호  
79. 5. 14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정상천  
편집 : 문화공보관 김인동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보

## 차 례

◎ 훈 명

제 503 호 : 서울특별시통계 사무운영규장..... 3

◎ 고 시

제 199 호 :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 8

제 20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변경결정및지적승인..... 8

제 20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시행허가..... 9

제 20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지적승인..... 9

제 203 호 : 도시계획시설 (광장)결정및지적승인.....10

제 204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10

제 205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조성사업)결정및시설  
(공원)결정.....11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693

제 206 호 :	도시계획사업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및 시설 ( 공용의 청사 ) 변경결정.....	12
제 207 호 :	도시계획시설 ( 공용의청사 , 도로 ) 변경 , 결정및지적 승인.....	13
제 208 호 :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 도로 ) 결정및지적승인	13
제 209 호 :	도시계획시설 ( 공용의청사 , 미관광장 ) 변경결정및지적 승인.....	14
제 210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및지적승인.....	15
제 213 호 :	도시계획시설 ( 미관광장 ) 결정및지적승인.....	16
제 214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하수도 ) 지적승인변경	16
제 215 호 :	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 지적승인.....	17
제 216 호 :	도시계획시설 ( 광장 ) 지적승인.....	17

◎ 공 고

제 152 호 :	KS 표시허가취소공고.....	18
제 154 호 :	영동제 1 지구및영동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인가 공고.....	19
제 155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지정공고.....	20
제 156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및하수도 ) 실시계획 공람공고.....	20
제 221 호 ( 성동구공고 ) :	공인개 각공고.....	24
제 27 호 ( 마포구공고 ) :	몽장직인폐인공고.....	25
제 52 호 ( 강남구공고 ) :	공인개 각사용공고.....	26

◎ 사 령

훈 령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9. 5. 14.

서울특별시장 경 상 천

○ 서울특별시훈령제 503 호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운영 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이하 "본청" 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화율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청 및 소속기관 상호간에 조사작성, 보고하는 통계와 중앙행정기관 (이하 "상급기관" 이라 한다.) 에 보고하는 모든 통계에 적용한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본통계" 라 함은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계로서 통계조정 심회와의 심의를 거쳐, 기본통계 목록에

수록된 통계를 말하며 "수서보고통계" 라 함은 기본통계 이외의 통계로서 통계심사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받는 통계를 말한다.

- 2. "제 1 차소속기관" 은 본청 직속기관과 구·출장소, 사업소, 경찰서, 소방서를 "제 2 차소속기관" 은 동, 파출소를 말한다.

제 4 조 ( 통계사무의 원칙 ) 통계사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 1. 통계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한다.
- 2. 통계는 적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한다.
- 3. 통계사무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 5 조 ( 통계심사관 ) 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청 및 각급 소속기관에 통계심사관을 두며 본청 각급에 본임통계 심사관을 둔다.

- 1. 본청의 통계심사관은 통계담당관이 되고 제 1 차 소속기관은 실무과장 (경무과장, 소방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제 2 차 소속기관은 사무장 또는 파출소장이 된다.
- 2. 본임통계 심사관은 국 주무관이 된다.

제 6 조 ( 통계심사관의 임무 ) ① 통계

심사관(본임통제심사관포함, 이하 같다)은 모든 통계의 생산, 집계, 보관, 관리 등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심사와 통제를 하여야 한다.

1.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2. 통계의 작성, 조사방법, 조사기준 일등의 타당성 여부
3. 다른 통계와의 중복여부
4. 통계조사 서식의 합리성 여부

②통제심사관은 조사작성된 각종 통계에 대하여 심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 통제심사 확인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통제심사 대장에 심사내용을 기록한다.

③통제심사관의 통제심사확인인이 없는 통계는 대외에 발표하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없으며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 기본통제대장 ) ①기본통제대장은 원표와 부표로 구분하고 원표는 총괄 자료를 작성 주기별로 부표는 지역별 작성 주기별로 기록 관리한다.

②각급 통계심사관 및 본임통제심사관은 기본통제의 조정, 변경, 추가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년 11월 말에 본청의 통제심사관에게 정기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 8 조 ( 수시보고통제 ) ①수시통제보고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보고통제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의에 통계심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통제심사관은 기안문과 시행문 작측 상단에 별지 제2호의 통제보고승인인을 주인하여야 하며, 별지제4호 서식의 수시보고 통제승인대장에 수보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본청의 통계심사관은 각급 통계심사관 및 본임통제심사관이 승인한 수시보고 통제 목록을 수시보고통제승인 대장에 총괄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 자료로 활용할 통계는 산하 각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 통계조정심의회 )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에 통계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통제로 규정할 통계의 목록
2. 각종 기본통제의 서식
3. 제 7 조 제 2 항의 요구에 의한 기본통제의 조정, 변경, 추가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 의 위원장은 통계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통계기준계장, 통계조사계장, 행정지도계장, 시민과 문서

통계계장,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장  
주택행정과 주택행정계장, 운수행정  
과 운수행정계장, 경찰국 경무계장  
이 된다.

③ 심의회는 년 1 회 정기적으로 개  
최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의회외 의안심의회는 위원 과 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0 조 ( 통계작성책임자 ) ① 통계심사관  
은 각 통계별 작성 책임자를 지  
정하여야 하며 작성책임자는 지정  
된 통계에 대하여 조사기준일을  
엄수 능동적으로 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된 통계자료는 통계심사관의  
심사를 위한후 즉시 기본통계 대  
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 11 조 ( 보관 및 관리 ) ① 통계 카드  
는 일정한 서장을 지정하여 서울

특별시 기관번호에 따라 국별, 과  
별로 일련번호를 정하여 집중 보  
고한다.

② 통계카드의 원표의 보관 및 관리책  
임자는 통계심사관이 되고 부표는  
작성자가 된다.

③ 과년도 통계카드의 원표는 행정  
자료실에 부표는 작성부서에서 영  
구 보관한다.

제 12 조 ( 지도감독 ) ① 통계심사관은  
통계행정 전반에 걸쳐 년 1 회 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 59 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필요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 별지 제 1 호 서식 )

통 계 심 사 확 인 인

○ 이 통계는 정확한 통계임

197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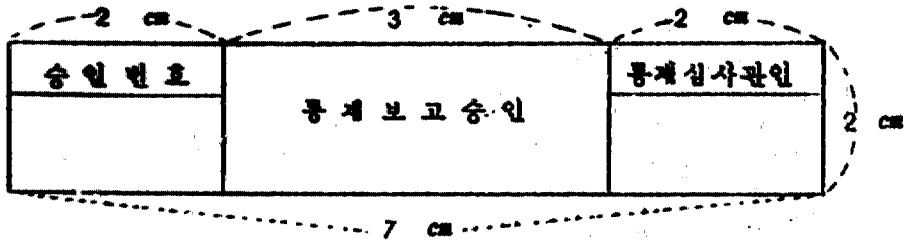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통 계    담당    관

10    cm

4 cm

(별지 제 2 호 서식)

통 계 보 고 승 인 인



(별지 제 3 호 서식)

통 계 심 사 대 장

입력 번호	월일	주관부서	통계명칭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원 이산이	결 제		
								제	제장	과장

(별지 제 4 호 서식)

수시 보고 통계 승인 내장

일련 번호	승인 일자	요구부서	통계명칭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내용	보고제출 기	보고 기일	결	
									계	통계심사관

신문용지 280mm X 170mm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 호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 1. 건설부 고시 제 104 호 ( '79. 4.4 )로 변경 결정된 당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 조서

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 '77.3.16 )에 의거 지적승인 하고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5. 12

서울특별시 장

변경구분	위치	면적(㎡)	비고
자연녹지→주거지역	관악구봉천동산 8-2 일대	8,506	전고서 315 호 ( '78. 10.20 ) 7,286 ㎡ 포함
" → "	강남구청담동구회정리지구	19,000	
아파트 지구	"	19,000	일부 경계 조성

\* 별첨 도면 표시 (도면생략)와 같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와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2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 '77.3.16 )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5. 12

서울특별시 장



○ 토신조사											
구분	등급	부별	번호	복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실	실	도로	3	137	25-27	400	누번동(대1-7)	누번동 131-1	누번천		
배	지	소로	3		6	419	"	" 141-1	대 3-137에 편입		
기	정	도로	2	7	30	1,500	서교동(대2-8)	성산동	중점부분가각전제		
번	경	도로	"	"	"	"	"	"	가각전제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허가

1. 건설부 고시 제 186호(62.12.20)로 지적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125호(79.4.19)로 도시계획사업 실시예 따른 서류 공람 및 의견 청취를 마친 하왕심리 2동-안정사간 도로 확장 공사는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호(77.3.16)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도시계획법 제 26조에 의거 사업실시 인가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 및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5.14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의 시행지 : 성동구 하왕심리 2동-안정사간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하왕심리 2동-안정사간 도로 확장 공사
3. 사업의 규모 : 폭 8미터  
연장 1,000미터
4. 사업의 시행자 : 성동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공 인가일  
준공 1979.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생략)
7.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설명 :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 공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90호로 변경 결정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41호(77.3.16)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5.15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점	소토	1	10	430	보광동 80-22	한남동 544-1	한남동 544-1
변경	"	"	"	490	"	" 547-1	일대위치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 203 호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광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

( '77.3.16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5.15  
서울특별시

○ 광장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건설	성북역광장	도봉구 월계동 382일대	3,645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204 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 고시 제41호(77.3.16)의 권한위임 사항에

외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  
기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79. 5. 15  
서울특별시장

○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여객자동차 정류장	도봉구원동 499 일대	5,563	
변경			6,654	추가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5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  
성사업) 결정 및 시설  
(공원)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시설 (공원)  
을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기 도

시 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 '77. 3. 16 ) 에 외거 이  
를 고시한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 1과와 관할구청 도  
시 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5. 15  
서울특별시장

가. 결정조서

구분	사 업 명	면적 (㎡)	위 치	비 고
신설	일단의 주택지 조 성 사업	17,890 (5,412 평)	성동구 성수동 2가 74-1 일대	
•	이런이 공원	826 ( 250 평 )	성동구 성수동 2가 74-5	사업구역내

\* 별첨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206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  
지 조성사업) 및 시설  
(공용의청사) 변경결정

1.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  
성사업) 및 시설 (공용의청사)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도  
시계획법 제12조의 건설부 고시  
제 41 호 ( '77.3.16 )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 1과와 관할구청 도  
시 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5. 1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 및 시설 변경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공용의 청사	일단의 주택 지 조성사업	강남구 서초 동 일대	100,000	90,000	공용의 청사 변경 (제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공용의 청사	일단의 주택 지 조성사업	종로구 구기 동 158 일대	50,000	50,000	공용의청사 변경 (제척)

\* 별첨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07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도로)변경,결정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도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가. 시설(공용의청사)조서

제 12조 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41 호 ( 77.3.16 )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모서는 서울특별시 은평출장소 도시계획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5. 15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승인	공용의청사	서대문구누번동산 38-8 부근	501.6㎡(1.516평)	제지 사용지
		서대문구누번동 84 부근	859.7㎡ (2,607.5평)	

나. 시설(도로)조서

구분	종류	구분	구분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변경	소로	2	8	90	누번동 100-37	누번동 86-40	제지
기정 변경		2	8	60	누번동 86-40	누번동산 39-9	특별축소
기정 변경		3	6				
기정 변경		1	10	110	누번산 42-1	누번산 39-9	특별축소
기정 변경		3	6				
기정 변경		3	6	375	누번동 94-14	누번 84(동경계)	연장축소
기정 변경				293			
기정 변경				82	누번동 83-1	누번 82-3	특별확장
기정 변경		2	8				
기정 변경		3	6	62	누번동 82-3	누번동 82-21	특별확장
기정 변경	중로	3	12				

별첨 도면표시와 간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08 호

도시계획시설(중합의로시설, 도로)결정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중합의로시설, 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277 ( 78.9.19 )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 ○ 종합의료시설 조서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5. 16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종합의료시설	도봉구공농동 208-8 부근	50,324 ㎡ (15,223 평)	신청자소유: 7,524 평			
○ 노선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중로	2	15 m	170 m	공농 208-4	공농 208-8	199호노선
신설	중로	2	15 m	60 m	공농 420-9	공농산 49-1	200호노선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제 2 ( 9 호 ) 도시계획시설 ( 공용의청사, 미관광장 )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 공용의청사, 미관광장 )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후	공용의청사	성북구성북동 330-226 외 2필지	8,251.3 ㎡ (2496 평)	폐지			
기정 변경후	미관광장	종로구세종로, 당주 도림동 일부	23,476 ㎡ (7100 평) 20,170 ㎡ (6100 평)				
기정 변경후	공용의청사	종로구세종로 79 부근 종로구도림동 20 부근	3306 ㎡ (1000 평) 6612 ㎡ (2000 평)	기동순환대부지 추가 폐지 1000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제 12 조 동법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 77.3.16 )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5. 16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2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2 조, 제 13 조 및 전설부고시제 41 호( 77. 3.16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5. 16

서울특별시장

로 선 조 서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총	점	비고
신설	책로	3	138	25 M	600 M	면목유수지(대2-23)	면목동 (중2-82)			
"	중로	1	206	20 M	1,260 M	면목동 (중2-82)	면목동 131 (대3-51)			
"	"	3	128	12 M	60 M	면목동	1326	면목동 782 (대3-)		
"	"	"	129	"	40 M	면목동	773	면목동 777 (대3-)		
"	"	"	130	"	50 M	면목동	750	면목동 750 (대3-)		
"	"	"	131	"	50 M	면목동	750	면목동 750 (대3-)		
"	"	"	132	"	25 M	면목동	841	면목동 843 (중1-206)		
"	"	"	133	"	20 M	면목동	841	면목동 841 ( " )		
"	"	"	134	"	20 M	면목동	959	면목동 959 (중1-206)		
"	소로	1		10 M	1,700 M	면목동	345	면목동 130		
"	"	"		"	30 M	면목동	800	면목동 803 (중1-206)		
"	"	"		"	20 M	면목동	809	면목동 810 ( " )		
"	"	"		"	15 M	면목동	977	" 867 (중1-206)		
"	"	"		"	30 M	"	902	" 902 ( " )		
"	"	"		"	25 M	"	963	" 963 ( " )		
"	"	"		"	15 M	"	968	" 968 ( " )		
"	"	"		"	12 M	"	866	" 866 ( " )		
"	"	"		"	30 M	"	956	" 958 ( " )		
"	"	2		8-10M	830 M	"	154(중1-206)	" 131 ( " )		
"	"	"		8 M	29 M	"	897	" 873 ( " )		
"	"	3		6 M	25 M	"	889	" 874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13호  
 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  
 결정및 지적승인

1.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을 다음과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41호

○ 미관광장결정및 지적승인

( '77.3.16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5. 17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미관광장	영등포구 선진동 772-853 일대	3,752 M <sup>2</sup>	

별첨 도면표시와 갈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수도)  
 지적승인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제 171호(79.4.25)와 제168호(79.4.24)로 결정 및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도로)에 대하여 결정 고시와 상이하계 지적고시되어 도시계획법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5.18  
 서울특별시장

가. 지적 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하수도	2-3	190	장위동 234-1	장위동 234-11	
변경	'	'	'	장위동 234-11	장위동 235-50	



구분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로	3		4-6	145	길음동 1274	길음동 625	
변경	"	"		"	"	" 1274-1	" 1274-14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15 호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3 호 ( '79. 5.4 ) 에 의거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 '77.3.16 ) 관한 위임 사항에

따라 지적승인 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5.18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지적 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하수도	2.0 M	490 M	홍은동 217-33	홍은동 171-5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16 호

도시계획시설 (광장)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150 호 ( 79.5.8 ) 로 변경결정된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광장) 을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 77. 3.16 )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5.18  
서울특별시장

o 광장지적승인 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38	새곡교통광장	강남구새곡동	12,000	면적추가
변경	38	'	'	17,700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10px 0;">공 고</div> ◎ 서울특별시 공고제 152 호 KS표시 허가취소공고 1979.5.11 공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의 규 서울특별시 장					
구분	회사명	대림통상(주) 금구공장	삼협밸브주식회사		
허가번호	제 1303	제 1264			
허가일자	76.4.17	76.2.9			
제조업체명	대림통상(주)금구공장	삼협밸브(주)			
대표자	이재우	김약환			
소재지	서울영등포구양평동 3가 60	서울영등포구신길동 66-9			
규격번호	2330	과 동			
품명	목수용 수도꼭지				
종류및등급	2급 목틀림꼭지 15, 판불이 앵글밸브 15, 가로형트랩 15, 커플링불이 가로꼭지 15	목틀림꼭지 15, 은냉수 혼합꼭지 고정형 2급			
취소사유	규격폐지로인한 자진 반납	규격폐지로인한 자진 반납			
취소일자	79.5.11	79.5.11			

**◎ 서울특별시공고제 154 호**  
 영동제 1 지구 및 영동추가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공고

1. 당시에 시 행중인 영동제 1 지구 및 영동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양계동 일대와 방배동 일대 지역은 건설부 고시 제 147 호 ( 78. 6. 15 ) 로 토지구획정리 사업구역 변경 ( 계획 ) 결정되어, 동지역의 사업 계획 변경 및 일부 공공 시설의 변경에 대하여 건설부 공고 제 45 호 ( 79. 4. 18 ) 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되었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별도 통지는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 한다.

1979. 5.  
 서울특별시장

사업계획 변경내용

지 구 명	변 경		
	당 초 시 행 면 적	변 경 후 시 행 면 적	내 역
영 동 제 1 지 구	5,128,091 평	3,853,194 평	영동 1 지구내 양계동 일대 계획 ( 1,274,897 평 ) 및 일부 공공시설 변경
영 동 추 가 지 구	567,433 평	263,119 평	영동추가 지구내 방배동 일대 계획 ( 304,314 평 ) 및 일부 공공시설 변경

<p><b>○ 서울특별시공고제 155 호</b></p> <p>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 예정지지정공고</p> <p>1. 서울특별시 공고 제 227 호 (78. 6. 2) 로 환지계획 공람공고한 영 동 제 2 지구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 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 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변경 지 정 하였기 공고 한다.</p> <p>2. 환지예정지 변경 도서는 도시정비 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 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별도 통보 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 고로 갈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9. 5.</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환지예정지변경내역)</p> <p>가. 사업명 : 영동제 2 지구 토지구획정</p>	<p>의 사업</p> <p>나. 변경면적: 8,250.8 평</p> <p>다. 변경위치: 강남구 압구정동 169 의 7 호 의 63 필지</p> <p><b>○ 서울특별시공고제 156 호</b></p> <p>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 호 (72.4. 17) 로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관 악구 노량진동 307-15에서 302-173 간 도로확장 구간내 저층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 반인에게 공람함.</p> <p>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게는 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 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함.</p> <p>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한다.</p> <p>가. 공고장소 : 관악구청 게시판</p> <p>나. 공고기간 : 79. . . - 79. . . ( 14 일간 )</p> <p style="text-align: right;">1979. . .</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	--

- 1. 사업시행지 : 관악구 노량진동 307-15에서 302-173간
-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노량진 2 동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
- 3. 사업의규모 : 도로확장포장 - 13.26<sup>㎡</sup> 하수도 - 165 미터 (D=450)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79. 7.31
- 6. 수용토는 사용할토지 : 별첨
- 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사 업 제 회 서

- 1. 사업시행지 : 관악구 노량진동 307-15에서 302-173간
- 2. 사업종류 및 명칭 : 노량진 2 동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
- 3. 사업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4. 사업개요 및 설명  
도로확장 및 포장 - 13.26 <sup>㎡</sup>  
하수도 - 165 m (D=450)  
부 대 공 사 - 1 식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1979.5.1 - 1979.7.31
- 6. 재원조서  
공사비 : 23,000,000 원  
보상비 : 50,000,000 원
- 7. 공사설계도서 : 별첨
- 8.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 9.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공 사 설 명 서

- 1. 본 공사는 노량진 2 동사무소 확장공사로서 B=8미터 L=213미터를 확장포장하여 주민 및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도시주변환경을 조성코자 도급으로 시행하는 공사임.
- 2.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량진동 307-15에서 302-173간
- 3. 공사개요  
B=8미터 L=213미터  
A=13.26 <sup>㎡</sup>  
하수도=165미터 (D=450)  
부대공=1식

총괄내역서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토공		1	식						3,092,001
2. 하수도공		"	"						2,239,725
3. 포장공		"	"						6,214,331
4. 운반공		"	"						192,233
5. 발생품공제		"	"						(-) 68,680
6. 가설비		"	"						700,000
7. 간접노무비		"	"						540,000
8. 잡비		"	"						3,508,390
9. 사재보험료		"	"						82,000
소계									16,500,000
10. V, A, T		1	식						1,650,000
계									18,150,000
11. 관급료비		1	식						3,279,710
12. 이설비		"	"						1,570,290
13. 보상비		"	"						50,000,000
총계									73,000,000





  

토지조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노량진동	302-9	대	16				노량진동 34	이용구
2	"	302-43	"	24				" 302-43	이외정
3	"	302-68	"	23				" 302-51	한건
4	"	302-132	"	7				" 313-85	박미옥
5	"	313-12	"	12				" 313-65	임원수
6	"	313-139	"	2				" 313-55	백승배
7	"	313-47	"	6				" 307-26	김승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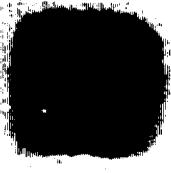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8	노량진동	313-44	대	26				노량진동 313-54	장익수
9	"	313-42B	"	16				" 313-54	장석수
10	"	302-391	"	23				" 302-177	김나수
11	"	313-140	"	5				" 225-17	최순식
12	"	309-34	"	20				" 309-4	정용식
13	"	309-35	"	16				" 309-4	삼거리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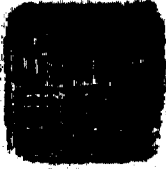





친 물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노량진동	313-72	연-와중	3			3	노량진동 313-4	고준필
2	"	313-95	연-와중	2			2	" 313-4	한창섭
3	"	313-94	연-무조중	5			5	"	김성범
4	"	313-54	연-와중	10			10	"	장익수
5	"	313-65	"	6			6	" 313-85	임현수
6	"	302-51	"	16			16	" 302-51	한건
7	"	302-43	"	9			9	" 302-43	이외정
8	"	302-160	"	1,71			1,79	" 302-34	이용구
9	"	302-85	"	10			10	" 225-1	정용식
10	"	313-51	"	3			3	" 313-4	김동원
11	"	313-113	스타보 3층	6			6	" 313-4	윤방권

<p>◎성동구 공고제 221 호</p> <p>공인 개각 공고</p> <p>관인규정 제 8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당 구 옥수제 2 동, 금호 1 가동, 하왕십리 제 2 동장 직인을 개각, 1979.6.1. 09:00부터 사용을 승인하였기 동조 공인 의 인 영</p>		<p>제(9)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1979.5.16</p> <p>성 동 구 청 장</p> <p>1. 개각공인명칭: 옥수제 2 동, 금호 1 가 동, 하왕십리제 2 동장 직인 2. 사용개시일 및 폐인일자: 1979.6.1. 09:00 3. 신조인영 및 폐인인영: 별첨.</p>	
신 조 인 영		폐 인 인 영	
공 인 명	옥수제 2 동장 직인	공 인 명	옥수제 2 동장 직인
신 조 인 영		폐 인 인 영	
공 인 명	금호 1 가동장 직인	공 인 명	금호 1 가동장 직인



<p>신 조 인 영</p>		<p>제 인 인 영</p>	
<p>공 인 영</p>	<p>하 왕심 리계 2 동장적인</p>	<p>공 인 영</p>	<p>하 왕심 리계 2 동장적인</p>
<p>◎ 서울특별시마포구 공고제 27 호 동장적인 폐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 1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 적 인 및 개인을 폐인 하였거 동조제</p>		<p>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 1979.5.12 마 포 구 정 장 1. 폐인대상동 : 4 개동 (공덕 2 동, 도 화 2 동, 신수동, 상암동) 2. 폐인일시 : 79.5.8. 09:00 3. 폐인인명 :</p>	
<p>제 인 인 영</p>			
<p>인 영</p>		<p>인 영</p>	
<p>공 인 영</p>	<p>공 덕 계 2 동장적인</p>	<p>공 인 영</p>	<p>공 덕 계 2 동장적인</p>

인 양		
공인	도 화 계 2 등 장 직 인	도 화 계 2 등 장 계 인
인 양		
공인	신 수 등 장 직 인	신 수 등 장 계 인
인 양		
공인	상 압 등 장 직 인	상 압 등 장 계 인

◎강남구 공고제 52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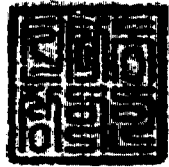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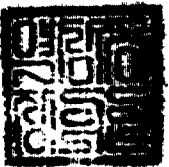



공인개작 사용 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6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적인 및  
제인용 기자 사용 승인한 언거 독조

제 9 조 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9.5.  
서울특별시 강남 구 청 장

1. 개작공인 사용개시일: 79.5.21. 09:00  
2. 공인개작동: 신사동, 역삼동  
3. 공이인영

공 인 인 영

	개 작 인 영 (신)		역 작 인 영 (구)	
인				
부속	신사동장적인	신사동장적인	신사동장적인	신사동장적인
인				
부속	역삼동장적인	역삼동장적인	역삼동장적인	역삼동장적인

사 명

① 1979.5.6. 대 통 령  
 행정사무관시보에임함.  
 1호봉을 급함. 박영복  
 완악구수습행정관을명함.  
 행정사무관시보에임함.  
 1호봉을급함. 신동식  
 동대문구수습행정관을명함.  
 행정사무관시보에임함.  
 1호봉을급함. 유영학  
 종로구수습행정관을명함.  
 행정사무관시보에임함.  
 1호봉을급함. 김윤문  
 성북구수습행정관을명함.  
 행정사무관시보에임함.  
 1호봉을급함. 이두형  
 중구수습행정관을명함.  
 행정사무관시보에임함.  
 1호봉을급함. 이강오  
 서대문구수습행정관을명함.

행정사무관시보에임함.  
 1호봉을급함. 김남열  
 용산구수습행정관을명함.  
 행정사무관시보에임함.  
 1호봉을급함. 김상일  
 성동구수습행정관을명함.  
 행정사무관시보에임함.  
 1호봉을급함. 박명현  
 영등포구수습행정관을명함.  
 행정사무관시보에임함.  
 1호봉을급함. 김철현  
 도봉구수습행정관을명함.

② 1979.5.7. 서 울 북 별 시 장  
 총 무 과  
 별정직 3을상당 장영석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③ 1979.5.9. 서 울 북 별 시 장  
 서 대 문 구 청  
 사 회 과 장 이두형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 48조 및 제 53조  
 규정을 위배하여 동법제 69조 제 1항  
 제 1, 2, 3 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